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4. 15(금)	
		작 성 문 의	국정운영실 기획총괄과 과장 박진호 / 서기관 박정용 (Tel. 044-200-2049)
* 엠바고 : 4.15(금) 09:00(관보 게재) 이후 사용			

## 테러방지법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- (테러대응체계) 효율적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간 역할·임무 명확화
- (인권보호) 대테러활동 관련 기본권 침해 없도록 '인권보호관'의 자격·임무 구체화
- (테러예방) 국가 중요시설, 중요행사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을 수립, 선제적으로 대비
- (피해지원) 테러로 인한 신체·재산피해 지원, 특별위로금 지급기준·절차 등 구체화

-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3일 공포된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(이하 테러방지법)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「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제정안을 마련, 4월15일~5월6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 공포 직후, '관계부처 합동 TF'(국무1차장 주재)'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,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우선, 국가적인 테러대응체계를 확립하고, 대테러활동 관계기관간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.
  -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는 '국가테러대책위원회'(위원장: 국무총리)를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19개 관계기관의 장\*으로 구성하고,

\* 국무조정실, 국방부, 외교부, 국토부, 안전처, 국정원, 경찰청 등

-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테러활동 총괄·조정 기능을 수행할 '대테러센터'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.
  - 아울러 관계기관이 테러 예방·대응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'전담조직'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.
  - 전담조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신설이나 인력확대 없이 대테러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테러대응체계에 있어서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, 5대분야별 관계기관의 장\*이 '테러사건대책본부'를 즉각 설치·운영하게 되며,
- \* △(외교부장관)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△(국방부장관)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 
△(국토부장관)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△(안전처장관)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 
△(경찰청장)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
-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'현장지휘본부장'이 대테러특공대,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관계기관의 조직·인력에 대한 지휘·통제권을 가지고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.
  - 특히, 테러사건 발생시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초동조치\* 사항을 규정하고,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일반테러의 경우 초동조치 책임자를 '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'으로 명시하여 초기단계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.
  - \* △사건현장의 통제·보존 및 경비강화 △긴급대피 및 구조·구급  
△관계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등 그밖에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또한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'대테러 인권보호관(이하 인권보호관)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.
- '인권보호관'은 대책위원회 위원장(국무총리)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,

- 대테러정책·제도에 대한 **인권보호 자문과 개선권고**, 인권침해 관련 **민원처리**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,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**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특히, 인권분야에 대한 **식견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**가 인권보호관을 맡아 **독립성을 갖고 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** 하였으며,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 **별도의 상근 보좌 인력도 지원**할 예정이다.
- 테러예방을 위해 **안전관리대책 수립해야 하는 ‘테러대상시설’**과 **‘테러이용수단’**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,
  - \* 공공기관·공항·항만 등 ‘국가중요시설’과 항공기·철도·백화점 등 ‘다중이용시설’
  - \*\* 테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·총기류·화생방물질 등
- **관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대책**에 △인원·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방호계획 △테러정보 입수·전파 및 긴급 대응체계 △비상대피 및 사후 처리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.
-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**국가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사특성에 맞게 분야별 대테러·안전대책을 수립·시행**하고,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**대테러·안전대책기구를 편성·운영**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**신고포상금, 테러 발생시 피해 지원,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절차를 구체화**하여 테러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도 확립하였다.
  -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**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**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  - **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**은 ‘신체피해 치료비’ 및 ‘재산피해 복구비’로 하고, 테러로 인하여 사망·장애·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유족·장해·중상해 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**특별위로금**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였다.
- 이번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**6월 4일**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※ (붙임) 국가대테러업무 수행체계도

(별첨)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입법예고(안)

